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19가합381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용준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600,00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4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00,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700,000,000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4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F'이라는 상호로 장의차 및 장의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자 원고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원고들(이하 각각 'A', 'B', 'C'이라 한다)을 포함한 G그룹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년부터 B에 재직하면서 G그룹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팀의 부장으로서 원고들의 재무회계관리와 E 개인의 계좌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다가 2011. 1. 14.경 퇴직하였다.

다. E 명의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가 2009. 9. 8. 해지되어 25억 원이 인출되었는데, 같은 날 개설된 원고들 명의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는 10억 원이, 원고 B에 대하여는 10억 원이, 원고 C에 대하여는 5억 원이 각 나누어 입금되었다.

순번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액
1	원고 A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억 원
2			(계좌번호 2 생략)	2억 원
3			(계좌번호 3 생략)	2억 원
4			(계좌번호 4 생략)	2억 원
5			(계좌번호 5 생략)	2억 원
합계				10억 원
1	원고 B	신한은행	(계좌번호 6 생략)	2억 원
2			(계좌번호 7 생략)	2억 원
3			(계좌번호 8 생략)	2억 원
4			(계좌번호 9 생략)	2억 원
5			(계좌번호 10 생략)	2억 원
합계				10억 원
1	원고 C	신한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2억 원
2			(계좌번호 12 생략)	3억 원
합계				5억 원

라. E 명의로 2010. 4. 23. 원고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7억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이하 위 다.항 기재 송금행위와 합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마. E은 원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합522031호)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2. 4. E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E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위 청구금액의 70% 정도를 인용하는 내용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043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6. 1. 14. E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1. 원고에게 각 2016. 1. 15.까지, 피고 A 주식회사는 9억 원, 피고 B 주식회사는 16억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잔존 금액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각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G그룹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E 소유 자금을 원고들에게 무단으로 송금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하였다. E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송금행위에 따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E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에 따른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E에 대한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구상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E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9억 원, 원고 B에게 16억 원, 원고 C에게 4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변제일 다음 날부터의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횡령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2009. 9. 8. 이전에 원고 A, B의 자금 각 10억 원과 원고 C의 자금 5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가 유출된 원고들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9. 9. 8. E 개인의 자금 25억 원을 원고들에게 송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B가 E에게 2007. 5. 25. 1억 5,000만 원, 2009. 1. 23. 6억 원 합계 총 7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2010. 4. 23. 위 대여금이 반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후 E 개인 소유 자금으로

반환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횡령행위로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억 원, 원고 B에게 16억 원, 원고 C에게 4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 B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3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205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원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은 대여금 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원고들의 직원인 피고의 E에 대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 사실(다만 손해배상청구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원인인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정결과에 따라 E에게, 원고 A이 9억 원, 원고 B가 16억 원, 원고 C이 4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뿐 피고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한 어떠한 청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E이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고 E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편취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의 주위적 청구를

하고 있고 달리 원고들의 변제행위로 인하여 면책된 피고의 E에 대한 채무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E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의 E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자신의 출연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그룹의 내부 감사결과, 이 사건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누락이나 위장회계처리 등이 있어 피고가 원고들 내지 E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실, 원고 B의 거래처원장상 E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2007. 5. 25. 1억 5,000만 원, 2009. 1. 23. 6억 원이 회계처리되었고 2010. 4. 23. 위 대여금이 반환된 것으로 대체전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G그룹의 내부 감사결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회계상 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② 피고는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송금행위는 G그룹 내 법인 간 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금을 전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위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 본인이 직접 원고들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 횡령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③ G그룹은 실질적으로 E를 정점으로 그 소속 법인 및 개인사업장이 하나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E의 개인운영업체인 F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보증금 등의 자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횡령사실이 증거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갑 제4호증의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5. 18.경 및 2011. 6. 9.경 두 차례에 걸쳐 “2007년경 원고 B의 회사자금 1억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편의점을 1년간 운영하다가 이를 잠실에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서울 H에 있는 I 아파트 J호의 전세보증금 중 2억 원은 회사자금을 유용한 부분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원고 B의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반복적으로 작성한 점, 피고는 그 작성의 진술서에 이 사건 송금행위 중 E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25억 원에 대하여는 단순히 자금을 전용한 것이라고 기재한 반면 2007년경 자신이 재직하던 원고 B의 회사자금에 대하여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기재한 점, 특히 2011. 6. 9.경 작성한 진술서에 서울 송파구 H 소재 아파트의 전세자금의 출처로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1억 원과 자신이 횡령한 회사자금 2억 원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기재한 점(따라서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횡령한 자금이 중복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 5. 18.자 진술서와 2011. 6. 9.자 진술서상 횡령금액이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2011. 6. 9.자 진술서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억 8,000만 원의 자금 출처를 각각 밝히면서 2억 원을 회사로부터 유용하였다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 위 진술서에 기재된 금액이 피고가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7년경 원고 B의 회사자금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부당이득으로 위와 같이 횡령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반환청구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6년경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인 원고 B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 없이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 B는 위 대여금 반환채권 중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81,446,08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대여금 81,446,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면제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부인 K가 대여금 반환채무나 횡령으로 인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또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여금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7년경이 되고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B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0. 4. 8. 비로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1. 5. 18.경 및 2011. 6. 9.경 피고가 원고 측에게 2007년경 원고 B의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고 전세계약이 만료 되는대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결국 원고 B가 위 진술서 작성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4.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한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여금 반환채권

주식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바(상법 제47조 제2항), 주식회사인 원고 B가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금전대여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 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18.경 및 2011. 6. 9.경 원고

측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의 승인과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에서 “2006년경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지원받았고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가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0. 4.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반환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횡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 B가 피고에게 위 채권에 대한 반환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는 연 12%이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원고 A, C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김진하, 판사 염정원